

대구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가단60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청도군 D 임야 68,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1. 11. 10. 접수 제17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1가합8274)을 제기하여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1. C 명의로 ‘2020.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1. 11. 10. 피고 명의로 ‘2021. 1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피고와 C은 부부 사이이고, C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E(개명 전: F)이 조카인 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피고가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양도담보권 설정 과정에서 피고 명의 대신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가 C에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실질적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양도담보권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전받기로 한 것으로, 양도담보권 설정 과정에서 배우자인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 피고는 2020. 8. 8.경 로또 복권 2등에 당첨되어 2020. 8. 10. 당첨금 63,513,206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972,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540,526원을 지급받았다.
- 2) E은 2020. 6.경부터 피고에게 20,000,000원 정도를 빌려주면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자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할 테니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2020. 8.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시로 양도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3) 피고는 2020. 8. 15.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 4) E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제가 조카인 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배우자인 C 명의로 우선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인 C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한 것이어서 기존 채무에 이행에 불과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